

01 법률칼럼

- '절세'와 '조세회피행위'
(김희석 변호사)

04 열려라 중국

- 상무부, 외국투자자의 지분출자방식 관련 의견수렴안 발표
(최홍화 중국변호사)

08 ¡Hola! 중남미

- 브라질 진출 시 주재원 비자 취득
(이병주 변호사)

11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Global 트렌드(일본)] 기로에 선 일본 원전...에너지 정책 변화 조짐(김홍영 전문위원)
- [Global 트렌드(라오스)] 라오스 역량 입증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반기일 변호사)
- [Global 트렌드(캄보디아)] 규제 적어 금융 산업에 진출할 적기(유정훈 변호사)
- [Global 트렌드(러시아)] 중국·동아시아에 가스 수출 확대(류혜정 변호사)

14 주목! 이 판례

- 아파트공급계약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의 입주지정 일의 의미(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7133)

18 최신법령

- 운송인과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등
-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 등 규정
- 워크아웃제도를 통한 기업의 경영정상화 도모

21 업무동향

- 무림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법인인 PT.PLASMA 합작투자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하나증권빌딩 인수 금융 법률자문

24 지평지성 단신

- 최승수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5월 사례연구회'에 발표자로 참석
- 김성수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제3회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 외
- 명한석 변호사, (사)해외자원개발협회 주최하는 '해외자원개발 법률·회계 설명회'에 발표자로 참석
- 박형삼 변호사,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예방교육'에서 '국내 공동행위 심판결 사례를 통한 실무의 이해' 강의
- 신민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제1회 주판 '증권금융원수원 제9기 연수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조달 유형' 강의

27 영입인사

- Claire YANG 미국변호사

28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 임승혁 공인회계사 · 세무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절세'와 '조세회피행위'



김희석 변호사

세무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가끔 고객으로부터 '절세'와 '조세회피행위'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객에게 명쾌한 답변을 못해 난감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절세'와 '조세회피행위'는 구분이 모호하고 개념의 외연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절세'이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회피행위'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납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인 반면 반대급부 없는 금전의 지급이므로 누구나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세무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절세'로 인정되지만 때로는 '조세회피행위'로 취급되어 사람들의 비난과 함께 가산세의 부담까지 지게 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논의가 있던 '엔화스왑예금'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기회에 '절세'와 '조세회피행위'의 구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명의신탁'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과세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자에 대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행위가 세법상 인정된다면 재산의 분산을 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소득을 발생시킨 거래행위·자산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명의자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Holmes 판사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이 연 나무에서 다른 나무의 것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비유로 이와 같은 원칙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아닌 실지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득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다면 이는 '조세회피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하나의 행위를 인위적으로 둘 이상의 행위로 나누거나 거래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이상한 거래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단계행위, 우회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단계행위, 우회행위는 행위의 경제적인 효과는 일반행위(통상적인 세금을 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와 동일하나 행위 형식에 따라 과세할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절세'로 인정할지, 아니면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과세할지가 문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행위'로 인정하는데에 큰 이론이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이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은 이미 세법에서 많은 다단계행위, 우회행위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세법에 처리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다단계행위나 우회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경제적 관찰방법'과 '법적 관찰방법'으로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찰방법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하므로 다단계행위나 우회행위는 일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적 관찰방법에 따르면 세법은 과세요건으로 정해진 법 형식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을 규정한 법이므로 다단계행위나 우회행위의 법 형식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다단계행위나 우회행위가 법 형식에 따라 일반행위와 다르게 과세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합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니다. 법적 관찰방법은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합니다.

'경제적 관찰방법'과 '법적 관찰방법'의 논거는 모두 일응 타당하고 학계의 대립도 팽팽하여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본질로 하는 세법의 속성과 '경제적 동일성'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제적 관찰방법'에 따른 과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과거 다수의 판결에서 '법적 관찰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최근 엔스왑예금에 대한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원심을 인정하여 '법적 관찰방법'에 따르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이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2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구23565 판결)"

결국 현재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다단계행위, 우회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조세회피행위'가 아닌 '절세'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신설되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이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Jipyong & Jisung](#)

(열려라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자의 지분출자방식 관련 의견수렴안 발표



최홍화 중국변호사

1. 서론

중국에서 한국투자자의 출자방식을 살펴보면 현금, 부동산,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지적재산권 등입니다. 한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수합병방식의 하나인 지분출자방식에 대하여 현재 중국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회사등록기관인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회사법에 의거하여 <지분출자등록 관리방법>(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발표하였고, 2010년 외환관리기관인 외환관리국은 <2010년 3호문건>¹을 발표하였습니다. 실무상 일부 외국투자자는 위 규정에 따라 지분출자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회사설립, 인수합병 등)에 대한 인허가기관인 상무부서는 아직 관련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실무 중 일부 지방의 상무부서는 외국투자자의 지분출자방식에 대한 상무부서의 통일규정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여 실제로 외국투자자의 지분출자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5월 4일 상무부서에서는 <외상투자기업 지분출자 관련 관리방법> 초안을 발표하여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아래에서는 동 의견수렴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규정의 주요 내용

(1) 지분출자방식 인정범위

- 규정에서의 지분출자방식은 중국투자자와 외국투자자(이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 내 기업(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 이하 '지분출자기업'이라 함)의 지분으로 출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에는 ① 신규 외상투자기업 설립 ② 증자를 통하여 기존의 내자 기업을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 ③ 증자로 인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이 변경되는 등을 포함함.

(2) 지분출자가 불가능한 경우

- 지분출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 지분이 법에 따라 동결(凍結)되었을 경우
- 지분출자기업의 정관(계약)에 따라 지분양도가 불가능한 지분인 경우
- 직전 연도 외상투자기업 연합연도검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통과되지 않은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으로 출자할 경우
- 외상투자성회사 또는 외상투자창업(지분)투자회사의 지분으로 출자할 경우

(3) 지분가액에 대한 확정

-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중국 내 평가기구의 평가를 거쳐야 하고, 지분 출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는 위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지분가액을 확정하여야 함. 위 지분가액은 평가가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
- 지분 출자금과 기타 비 화폐재산의 출자금 합계는 등록자본금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4) 기타 주요 내용

- 지분출자로 인하여 지분출자기업과 투자기업 간에 상호 지분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됨.
- 투자기업이 유한책임회사일 경우 투자총액은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과 투자총액비율에 대한 잠행규정>²과 지분출자 후 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에 따라 추정함.
- 외국투자자가 지분출자기업의 지분으로 중국 내 상장기업의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에 참여할 경우 <외국투자자의 상장기업 전략투자관리방법>³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자자의 지분출자가 국무원의 <외국투자자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에 대한 통지>⁴와 관련될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안전심사신청을 하여야 함.
- 투자기업의 외채등기 및 수입면세 한도를 정할 시 등록자본금에서 지분출자부분을 공제한 후 투자총액을 추정하여 결정함.

3. 맺은말

비록 현재 위 규정은 의견수렴안이지만 근래의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을 살펴보면 빠른 시일 내에 정식 규정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위 규정이 정식으로 발표될 경우 외국 투자자는 지분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 출자할 수 있고 또한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에 중요한 경로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지분출자방식은 기타 다른 출자방식과 달리 동시에 많은 외국투자 관련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또한 상황에 따라 상무부서, 증권감독관리기관, 국유자산관리기관, 공상행정관리기관, 세무기관 등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등록 또는 변경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지분출자기업이 지분출자로 인하여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에서 내자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수우대정책이 취소되고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기업이 기존에 내자기업이고 외국투자제한유형에 종사할 경우 외상투자기업으로의 변경과정에서 인허가를 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지분출자는 외국투자자의 인수합병규정, 안전심사규정, 반독점규정, 중국 내 재투자규정 등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출자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구조에 따라 사전에 단계별로 각 이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 1) 중문명칭은 <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外商投资企业外方股东以境内股权出资办理验资询证有关问题的批复>입니다.
- 2) 중문명칭은 <关于中外合资经营企业注册资本与投资总额比例的暂行规定>입니다.
- 3) 중문명칭은 <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입니다.
- 4) 중문명칭은 <国务院办公厅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입니다.

Jipyong & Jisung

(¡Hola! 중남미)

브라질 진출 시 주재원 비자 취득



이병주 변호사

1. 들어가면서

지난 호까지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진출 시 현지법인의 설립방식 및 설립 시 자본금 송금 절차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현지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이후,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 몇 회에 걸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주제는 브라질 현지 주재원의 비자 취득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2. 비자발급요건

브라질에 주재할 현지 직원들의 비자취득은, 경영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와 경영 이외에 업무에 종사할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종류에 따라 비자 종류, 발급 조건 및 비자 갱신 요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 경영 관련 업무 종사 시

브라질에 주재할 직원이 현지 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영주비자가 필요하고 이는 브라질 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i) 1인당 USD 50,000을 투자하고, 2년 이내 신규 일자리 10개를 창출하거나, (ii) 1인당 USD 200,000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위 영주비자의 발급 조건에 따라 그 갱신 요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위 (i)의 조건을 충족하여 영주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2년 후 약속한 대로 신규 일자리 10개(여기서 신규일자리란 위한 근로자는 브라질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합니다)가 창출되고 근로계약 효력이 존속되면, 우선 영주비자의 1차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갱신할 필요가 없는 영주비자가 발급됩니다. 한편, (ii)의 조건을 충족하여 영주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영주비자 신청 시 브라질 법무부에 등록된 직업 및 주소가 비자기간 만료 시까지(최장 5년) 유지되고 근로계약 또는 연장되면, 갱신이 필요 없는 영주비자가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주소 이전은 가능하나 반드시 법무부에 이러한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영주비자 발급 조건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 약속을 위반할 경우, 법인 대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발급된 영주비자의 갱신 또한 불가능하게 됩니다.

나. 경영 이외 관련 업무 종사 시

브라질에 주재할 직원이 현지 법인의 경영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영주비자가 아닌 임시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것으로 족하나, 이 또한 영주비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임시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 대학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 최소 9년 이상 교육 및 2년의 업무 경력, (ii) 대학교육을 요구하는 직업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후 1년의 업무 경력, (iii) 학교 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 3년의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임시취업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갱신 당시 근로계약이 유효해야 하는데 이러한 갱신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4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 존속할 경우, 임시취업비자는 영주비자로 변경 가능하게 됩니다.

3. 비자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비자 신청은 먼저 브라질 법인이 브라질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그런 다음 근로자가 주한 브라질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자 신청 시 별도의 인터뷰 절차는 없고,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데까지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영주비자의 경우에는 여권, 예방주사 증명서(필요시), 과거 무범죄 증명서, 주소 증명서, 출산 또는 결혼 증명서 및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시비자의 경우에는 여권, 예방주사 증명서(필요시), 건강증명서, 과거 무범죄 증명서 및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Jipyong & Jisung](#)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브라질,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한경BUSINESS

No. 806 | 2011. 5. 18.



[Global 트렌드]

후쿠시마 원전 사태 후폭풍

기로에 선 일본 원전...에너지 정책 변화 조짐

원자력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라는 일본 정부의 '언설'은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을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아주 유효하게 기능해 왔다. 적어도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위기적인 상황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세 번의 전환점을 거치며 형성됐다. 첫 번째는 1973년과 1979년의 1, 2차 오일쇼크다. 두 번의 오일쇼크로 에너지 정책 방향의...

김홍영 전문위원

hykimu@jipyong.com

PDF e-Link



[Global 트렌드]

ASEM 개최하는 라오스

라오스 역량 입증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

내년 11월 제9회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라오스의 수도이자 최대 상업 도시인 비엔티안에서 개최된다. ASEM은 규모나 관여 범위에서 다른 정상급 회담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가 단순히 경제 및 무역 분야에 중점을 두는 반면 ASEM은 정치·교육·문화교섭·국가보안 등 다루는 주제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이와 함께 ASEM은 EU의 27개국, 아시아의 16개국(한국·중국·일본 등)과 유럽위원...

반기일 변호사

kiban@jipyong.com

[PDF](#) [e-Link](#)



[Global 트렌드]

캄보디아 금융시장

규제 적어 금융 산업에 진출할 적기

캄보디아에서 금융 산업 분야는 아직 유아기다. 그만큼 규모나 영업 형태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캄보디아 서민 대부분이 은행보다 개인 간의 '계' 형태로 조직된 사설 금융을 이용한다. 부유층도 금 또는 달러를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선호한다. 보험회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강제 가입 사항이 아닌데다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자동차 보유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상해...

유정훈 변호사

yoojh@jipyong.com

[PDF](#) [e-Link](#)



[Global 트렌드]

세계 최대 가스 기업 가스프롬

중국·동아시아에 가스 수출 확대

세계 자원 시장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위상은 세계 최대 가스 기업이자 러시아 최대 기업인 '가스프롬'으로 대변된다. 가스프롬은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향후 정치 판도를 가늠하게 하는 방향타를 제시한다. 가스프롬은 2007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엑슨모빌과 제너럴일렉트릭(GE)에 이어 세계 3위 기업에 올랐다. 그러나 과도한 해외 투자로 부채가 누적되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뒤이은 유가 하락으로 2009년에는...

[PDF](#) [e-Link](#)

류혜정 변호사

hjryu@jipyong.com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홈페이지) [Jipyong & Jisung](#)

(주목! 이 판례)

아파트공급계약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의 입주지정일의 의미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7133【부당이득금반환】

1. 판결의 취지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주지정일이 입주기간(5. 31.부터 7. 9.까지)으로 정해진 경우, 위 조항의 '입주지정일 이후'의 의미를 '입주기간 초일 이후'로 해석할 수 없다.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

2. 사실관계

A, B, C 건설사(이하 '피고들')는 수분양자인 원고들과 경기 화성 동탄 시범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9조에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단, 수분양자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는 수분양자가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입주기간을 2007. 5. 31. 부터 2008. 7. 9. 까지(40일간)으로 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모두 2007. 6. 1. 이후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마쳤습니다.

한편 화성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당시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2007. 7. 30. 경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납부한 재산세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들로부터 교부받기 위해 일단 피고들에게 재산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을 상대로 재산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① 위 아파트공급계약서상으로도 입주지정일이 나중에 기간으로 정하여진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입주기간 중에 자유롭게 입주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한편,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은 관리비 부담에 관한 조항과 유사한데, 피고들은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한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실제 입주일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만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모두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 관리, 사용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기록상 양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에 그 부담 주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근거도 없다.

③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의 '입주지정일 이후'를 '입주기간 초일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수분양자는 입주기간 동안에는 실제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발생하게 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가 지정된 입주기간 중에 자유롭게 실제 입주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규정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④ 수분양자는 지정된 입주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입주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데다가,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는 경우의 관리비나 제세공과금의 부담 문제에 관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제9조]은,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입주기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수분양자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입주기간 중 발생한 제세공과금의 부담관계를

정한 조항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에 근거하여서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판결의 의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지방세법 제114조),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나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아파트 분양시 입주지정일을 5월 31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입주지정일을 5월 31일로 정하면 이후에 발생한 재산세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입주지정일'이라는 용어는 입주기간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도 입주지정일을 기간으로 예정한 조항을 두고 있고(예를 들어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40~6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입주기간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9조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이 입주기간의 초일을 의미하는지 입주기간의 말일을 의미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분양자들은 입주기간의 초일을 의미한다고 보아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부담시켰고, 이 사건 피고들도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은 입주기간의 초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2007년 5월 31일 이후 발생한 재산세를 원고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입주기간 내에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입주기간 초일 이후 발생한 재산세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주기간을 6월 1일을 걸쳐서 지정할 경우, 입주자들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면, 이들에게 재산세를 부담시킬 수 없고 분양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가능한 입주기간을 5월 31일 이전까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아파트 공급계약서 조항을 '입주지정일 초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본 판결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은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 점, ②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였는데도 입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아파트 공급계약서 개정으로 분양자가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7133 부당이익금반환](#)

Jipyong & Jisung

(최신법령)

1. 운송인과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등

: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10696호, 2011. 11. 24. 시행)

1.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감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특히 여객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898조).
2.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고의 또는 인식 있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899조).
3.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육상·해상운송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화물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902조, 제919조).
4. 항공기 사고로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닥친 당장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체 없이 먼저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선급금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제906조).
5. 다운로드 :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10696호, 2011. 11. 24. 시행)

2.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 등 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8. 20. 시행)

1. 신용정보를 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②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③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⑤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정보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제2조 제1호).
2.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 제2항, 제3항).
3.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22조의2, 제52조 제3항 제4호의2).
4. 다운로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8. 20. 시행)

3. 워크아웃제도를 통한 기업의 경영정상화 도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법률 제10684호, 2011. 5. 19. 시행)

1. 최근 건설업의 회복 지연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0년 12월 31일에 실효됨으로써,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법률 제10684호, 2011. 5. 19. 시행) [Jipyong & Jisung](#)

(업무동향)

무림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법인인 PT.PLASMA 합작투자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지평지성은 무림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법인인 피티 플라스마(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에 합작투자로 참여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림지 합작투자계약이 2011년 6월 1일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무림인터내셔널은 지난 4월 국내 펄프·제지기업인 무림P&P가 조림 등의 투자를 위해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 이번 계약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본격적인 조림사업을 위해 피티 플라스마의 지분 50.6%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무림인터내셔널은 이번 계약에 따라 65,000ha(서울시 면적)의 조림지를 인도네시아에 조성하여 오는 2018년부터 목재 칩을 최대 연간 40만 톤 이상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까지 약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파이낸셜뉴스 - 무림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조림지 합작투자계약(2011. 6. 1.)
- 서울경제 - 무림, 印尼 조림사업 투자 계약(2011. 6. 1.)
- 아시아경제 - 무림인터내셔널, 해외조림사업 본격화(2011. 6. 2.)

[담당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정철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배지영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Jipyong & Jisung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하나증권빌딩 인수금융 법률자문

지평지성이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여의도 신증권타운에 있는 하나증권빌딩 매입을 위한 인수금융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래에셋맵스는 지난 5월 31일 사모펀드로 조성한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 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를 통해 여의도 신증권타운에 있는 하나증권빌딩을 2400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으며 이 사모펀드에는 연기금 보험사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관련기사]

- 한국경제 - 미래에셋맵스,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2400억에 인수(2011. 6. 2.)
- 매일경제 - 미래에셋,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샀다(2011. 6. 2.)
- 동아일보 -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인수(2011. 6. 2.)

[담당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김준환 변호사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최승수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법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5월 사례연구회'에 발표자로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5월 19일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5월 사례연구회'에서 '외톨이야' 표절사건을 중심으로 음악표절사례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법률신문 - 엔터테인먼트법 사례연구회(2011. 5. 16.) [Jipyong & Jisung](#)

김성수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전자소송제도연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5월 30일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법원 전자소송제도연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매월 한번 개최되는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오종수 변호사, 부위원장 최공웅 변호사, 위원 김성수 변호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변호사가 새로 시행되는 전자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법원에서 전자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근 판사(민사심의관)가 동석하여 전자소송 진행 1개월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5월 31일 '제24회 세계금연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금연의 날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겸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일 오후에 열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한 금연정책 심포지엄'에서 'FCTC 관련 국내법 현황'에 관한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국민일보 - 금연운동협의회, 금연의날 맞아 거리캠페인(2011. 5. 30.) [Jipyong & Jisung](#)

명한석 변호사, (사)해외자원개발협회 주최하는 '해외자원개발 법률·회계 설명회'에 발표자로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는 지난 6월 13일 (사)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최하는 '해외자원개발 법률·회계 설명회'에서 '해외진출 전략과 리스크 통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현행 해외자원개발 법률·회계에 대한 해외자원개발기업의 이해 제고와 실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박형삼 변호사,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예방교육'에서 '국내 공동행위 심판결 사례를 통한 실무의 이해'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형삼 변호사)

지평지성 박형삼 변호사는 지난 5월 18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공동행위(담합) 예방교육'에서 '국내 공동행위 심판결 사례를 통한 실무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신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증권금융연수원 제9기 연수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조달 유형'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신민 변호사)

지평지성 신민 변호사는 지난 6월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증권금융연수원 제9기 연수과정'에서 '회사 자금조달의 유형 개관'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Claire YANG

미국변호사

claireyang@jipyong.com

□ 학력사항

- 미국 Baruch College, CUNY (B.B.A., magna cum laude)
-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J.D.)

□ 경력사항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Program Officer,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 Associate, Vinson & Elkins LLP, New York
- Attorney, Caterpillar Inc., Peoria, Illinois
- Associate, Shearman & Sterling LLP, New York
-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Hong Kong
- Associate, Ropes & Gray LLP, New York, Hong Kong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국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Claire Yang 미국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새롭게 입사하여 첫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5여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거래, 해외투자, 사모펀드, M&A, 기업일반 및 금융 법률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지평지성에 입사하기 전에는 미국 대형로펌의 뉴욕과 홍콩 사무소 및 미국 캐터필라 주식회사 회사법 분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평지성의 동료들과 함께 보다 전문성 있고 충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임승혁 공인회계사 ·
세무사
shim@jipyong.com

□ 학력사항

- 배재고등학교 제39회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세법 연구과정 수료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eventhal School of Accounting (Master of Business Taxation)

□ 경력사항

- 제31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1996년)
-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법무법인 지평 공인회계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공인회계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임승혁 회계사입니다.

저는 미국 Los Angeles에 있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Leventhal School of Accounting에서 Master of Business Taxation 과정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간 업무 경험과 유학 중에 배운 미국세법을 토대로 M&A 세법 해설서를 쓰기 시작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JIPYONG & JISUNG

<http://www.jipyong.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순천 분사무소

(540-330) 전남 순천시 왕지동 870-1 금강타워 3층 Tel : 061)724-2001 Fax : 061)725-7604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2301-9820 Fax : 856-21-264-344